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항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공기정비 산업 지원을 위한 항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688호, 2023. 8. 16)됨에 따라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지원사업 위탁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공사업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항공기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안 제 33조제6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6항에 따라 법 제69조의3에 따른 항공기정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
2.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4.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5. 「항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협회
6. 「항공사업법」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항공산업발전조합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항공산업 관련 법인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⑤ (생략) <u><신설></u>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 제6항에 따라 법 제69조의3에 따른 항공기정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1. <u>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정비사 전문교육 기관</u> 2. 「 <u>항공안전기술원법</u> 」에 따른 <u>항공안전기술원</u> 3. 「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 제22조의4에 따른 <u>관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u> 4. 「 <u>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u> 」 제1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u>기관 또는 비영리법인</u> 5. 「 <u>항공사업법</u> 」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u>한국항공협회</u> 6. 「 <u>항공사업법</u> 」 제69조의3에

	<u>따라 설립된 항공산업발전조 합</u> <u>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된 비영리법인 중 항공산업 관련 법인</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44) 201 - 4194